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제과학기술규범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5. 9. 19. ~ 9. 2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외교부령 제 호

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5 제1호나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5년 9월 30일”을 “2027년 9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